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6월 21일, 김원이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8.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8.21.)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의원)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안 제20조의3 신설).

1) 개정안과 유사하게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기관 등이 직권으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109086호·제2119862호·제2124169호)이 제21대국회에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3.11.29.)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11.30.)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현행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는 내부지침(「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근거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²⁾.

동 지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별·용도별·계절별로 경감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경우 약 175만 가구에 총 5,12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³⁾.

한편,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⁴⁾가 도시가스 요금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 공사비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현행법 제20조제2항⁵⁾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자연재난)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시행 중이며, 2023년 기준 총지원액은 약 5,351억 원(사회복지시설 소매 지원금액 미포함)임.

3)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참고자료 1) 참고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⁶⁾.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요금감면 대상(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은 현행 정부 지침상의 경감대상과 유사하고⁷⁾,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이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 정부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감면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6)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요금감면 규정 현황(참고자료 2)

7) 단, 현행 지침상 경감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대상자의 범위, 방법 등은 정책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금감면 서비스 직권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부 지침상 신규감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⁸⁾, 사회적 취약계층이 관련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 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복지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감면을 직권으로 신

8)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경감신청) ①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1 및 2의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불가피하고 당사자의 수용성⁹⁾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며,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 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도시가스요금 경감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전기요금 등 타 복지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회적배려대상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도시가스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의 동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등을 추가함.

수정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의 동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 나.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경감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4 신설).
- 다. 요금경감 신청을 위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제48조제3항제2호).
- 라. 하위법령의 개정 등 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함(안 부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
2.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

설한 자

안 부칙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을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신 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
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
의를 구하여야 하
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지원 대상
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
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산
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 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제48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가스공급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
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제4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용하거나 다른 사
람 또는 기관에 제
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
는 정보에 대하여
는 수수료 및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
보의 구체적인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벌칙)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도시가스사업자 <u>외의 가스공급시 설설치자의 가스 공급시설을 손괴 하거나 그 기능 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u>
④ ~ ⑬ (생 략)	<u><신 설></u>	2. 제20조의4제3항 <u>을 위반하여 자 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u>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u>공포 후 3개</u> <u>월이 경과한 날</u>부터 시행한다.	④ ~ ⑬ (개정안과 같음) 부 칙 ----- <u>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

2.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u> ① <u>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u>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20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u> ① <u>가스도매사업자,</u>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스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제2항의 신청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

제48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u><신 설></u>	<u>방해한 자</u>
	<u>2.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u>
	<u>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u>
	<u>또는 누설한 자</u>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